

[별표 7]<개정 2012. 6. 25., 2016. 10. 12., 2018. 6. 25., 2018. 8. 9., 2020. 11. 26., 2026. 5. 7.>

가점부여 기준(제38조 관련)

평정 대상	최대 가점
직무관련 자격증	0.65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1
인권사무소 근무 경력 (사무처에서 전보된 공무원과 인권사무소간 전보된 공무원)	3
인권사무소에서 사무처로 전보된 공무원 근무 경력	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관련(단, 교육훈련 파견은 제외)	2
국가인권교육센터 근무 경력	2
업무혁신	1
전문직위 근무경력	1

※ 근무경력 가점은 경력평정가능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함

※ 경력 관련 가점평정은 경력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다만,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의 경력만 인정함.

1. 직무관련 자격증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공무원이 다음 일반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의 해당직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함.<개정 2020. 11. 26.>

일반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 <신설 2020. 11. 26.>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관 세, 사회복지, 통 계,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 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 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 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 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 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 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일반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에 따른 기준점

구분	기준점
해당직렬의 해당직급 또는 상위계급 해당 자격증	0.65
해당직렬의 바로 하위계급 해당 자격증	0.4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

## 2.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감사반 등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해당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부서 근무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 3. 인권사무소 근무경력(본부에서 전보된 공무원 경력과 인권사무소간 전보된 공무원)

인권사무소에서 근무한 해당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매 1월에 0.12점을 곱하여 최대 3점으로 함.<개정 2016.10.12.>

### 3의2. 인권사무소에서 사무처로 전보된 공무원 근무 경력

사무처에서 근무한 해당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매 1월에 0.12점을 곱하여 최대 3점으로 함. 단, 개인희망이나 징계성 전보 및 사무처에서 지속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 전보된 경우는 가점대상에서 제외함.<개정 2018. 6. 25.>

### 3의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관련(단, 교육훈련 파견은 제외)

파견 근무한 해당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매1월에 0.12점을 곱하여 최대 2점으로 함.<개정 2018. 6. 25.>

### 3의4. 국가인권교육센터 근무경력

- 국가인권교육센터(본부 기준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한 경우)에서 근무한 해당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매1월에 0.12점을 곱하여 최대 2점으로 함.

- 국가인권교육센터 근무 경력에 대한 가점 부여는 국가인권교육센터 개원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함. 이후 가점부여 및 가점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별도로 정함.

## 4. 업무혁신 가점

직급에 상관없이 업무혁신 실적이 매우 탁월 또는 우수한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여할 수 있되, 1점을 초과하지 못함.(「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인사가점 포함) <개정 2018.8.9.>

## 5. 전문직위 근무경력<신설 2012.6.25.>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해당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각 전문직위 근무경력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